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590 발의연월일: 2025. 5. 23.

발 의 자:허성무·김동아·이재관

임오경 · 임미애 · 서미화

이언주 • 박선원 • 조인철

정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개발, 공급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나, 에너지 교육 사업에 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에너지전환이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국민 및 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특별회계의지원대상 사업으로 명확히 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에너지 교육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너지	제2조(정의)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의2. 에너지 교육 사업</u>		